만일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할 경우, 이는 의료법 2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법**27**조

③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ů알선ů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비급여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보인부담금 할인을 화자 유인, 알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비용 할인 가능한가요?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직원) 진료비 학인의 의료법과 세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ů알선ů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세무

판례(2007도10542,2008.2.28)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직원 복리 후생제도로 본인 50%(본인부담 만원이하시 무료) 직계가족 50%, 형제 자매 20%의 진료비 할인을 받았을 시는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Q. 질문 1. 직원본인진료시 본인부담 만원이하시 진료비를 무료로 했을때 1년간 할인 받은 금액이 급여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문 2.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사촌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 받았을시 1년간 할인 받은 금액이 급여로 잡혀 세금을 내야

질문 2.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사존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 받았을시 1년간 할인 받은 금액이 급여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는지?

Q. 질문 3. 지인 또는 단체와 자매결연으로 진료비 감면시 세무법에 유의 해야 할 부분은?

질문1,2의 진료비 할인은 급에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질문 3의 경우는 급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의 자체규정과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다른 계정(기부금, 결손금, 등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